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마주의 마권 구매·알선 또는 양수 금지 규정〉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65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마주의 마권 구매·알선 또는 양수 금지 규정(안 제49조제2항 후단 신설 등) ..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2. 11.

다. 회 부 일 : 2024. 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함)의 임직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등의 마권 구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주는 자신이 소유한 경주마에 대한 상태, 훈련 기록, 부상 여부 등 내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경주 결과를 예측하거나 자신의 경주마가 우승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경주마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주는 본인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한정하여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경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마주의 마권 구매·알선 또는 양수 금지 규정(안 제49조제2항 후단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마주로 하여금 본인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의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讓受)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① (생략)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알 선 또는 양수(讓受)하여서는 아 니 된다. <u><후단 신설></u>	② ----- ----- ----- -----, <u>이 경우 제6호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의 마권 에 한정한다.</u>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u>6. 마주</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경마산업 영향, 타 사행산업 사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의견 등 추가 내용 조사, 논의를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개정 법률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판단 필요

마주협회의 반대, 경마의 유래가 마주의 소유마 간 능력 경쟁을 위해 시작된 점, 다른 나라에서는 마주의 베팅 금지 사례가 거의 없는 등의 상황도 고려 필요

2) 한국마사회

마주에 대해 소유한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의 마권 구매를 제한하는 것은 경마의 본질 및 특성과 배치되고, 경마의 본질 훼손 및 마주 존재 의미가 퇴색될 경우 경마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마주가 경주마 관련 세부 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가 불가하므로, 개정안은 신중검토 필요

3) 서울마주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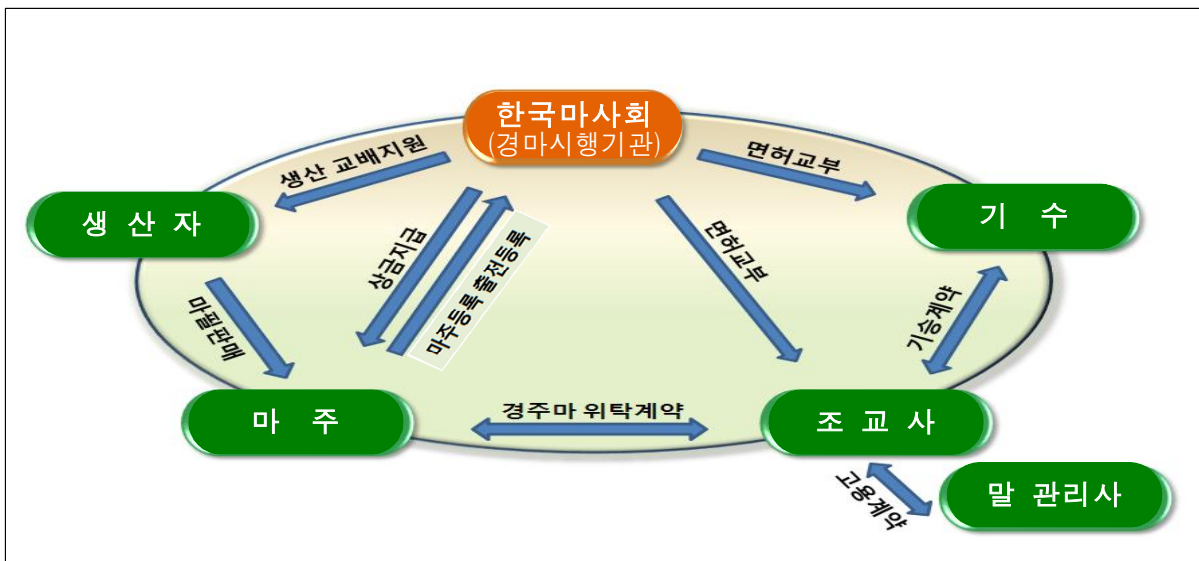
현대 경마의 태동 시부터 마주가 본인 말에 돈을 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국가는 없음. 또한, 경주마에 대한 정보는 경마홈페이지·경주프로그램 책자 등을 통해 누구든지 동일하게 획득할 수 있는 내용인바, 마주만이 독점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마주 본인의 말이 출전하는 경주에 대해 마권 구매를 금지하는 것은 마주에 대한 역차별이므로, 개정안에 반대함.

다. 검토 의견

현행법 제49조는 한국마사회의 ‘임직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등의 마권 구매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51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¹⁾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정은 경마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됨.

【 경마산업 관계도 】



1) 「한국마사회법」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① 마사회는 미성년자(전자마권의 경우에는 21세 미만인 사람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마사회의 임직원
3. 조교사·기수·말관리사
4. 미성년자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10.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

- 경마는 시행기관인 한국마사회와 경주마 소유자인 마주 외 조교사·기수·말관리사 등 경마관계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행
- (마 주) 경주마의 소유자로 말 출전을 통해 경마에 참여
 - (조교사) 마주로부터 경주마를 수탁 관리
 - (기 수) 조교사와 계약에 따라 경주에 기승
 - (말관리사) 조교사협회와 고용계약에 따라 말 관리·훈련

(‘25. 1.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마 주	조교사	기 수	말관리사	계
서 울	476	42	51	457	1,026
부 경	380	29	31	260	700
제 주	181	19	25	98	323
계	1,037	90	107	815	2,049

※ 자료: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 경영관리처 법무지원부 제출(2025. 3. 12.)

한편, 마주²⁾는 자신이 소유한 경주마의 상태, 훈련 기록, 부상 여부 등 내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주마가 우승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경주마에 베팅을 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마주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한정하여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경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한국마사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마주"란 경주마(競走馬)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마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경마의 경우 마주의 소유마 간 능력을 경쟁하기 위해 시작된 이후 배팅의 요소가 가미되어 현재의 관람 스포츠로 자리잡은 측면을 고려할 때,

마주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대해 배팅(마권 구매)을 금지하는 것은 경마의 근간 및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마주는 경마산업 전반의 모든 계층(생산농가, 말조련사, 조교사, 기수 등)의 소득 원천이 되는 관련 비용 지급의 주체인바,

개정안에 따라, 마주에 대한 규제가 신설될 경우 마주의 투자 위축 및 기존 마주의 이탈 등으로 경마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이는 마사회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져 ①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②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③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④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축산발전기금³⁾ 등 공공재원 마련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손익금의 처리) ①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填)

우려도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경주마에 대한 관련 정보는 경마홈페이지 및 오늘의 경주⁴⁾ 등을 통해 모든 경마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경주 당일 출발 50분 전 모든 출전 경주마에 대하여 마사회 소속 수의사가 상태 이상 여부 등을 확인 후 이상 발견 시 해당 내용을 공지하여 출전에서 제외하는 등 경주마의 건강 및 상태 등을 경주 전·후 관리하고 있음.

【 경주마 점검 시행 개요 】

- (출발 180분 전) 시료(소변) 채취 및 약물검사(검사결과 심판위원 통보)
- (출발 50분 전) 각 경주마 마체검사 및 체중 계량
- (경주 후) 심판 및 수의위원이 지정하는 경주마에 대해 마체검사 실시

- 2. 자본금의 100분의 50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특별적립금으로 적립

- ②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사업확장적립금,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 ⑤ 마사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축산발전기금에 출연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년도 집행실적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적립금의 다음 연도 집행계획을 그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한국마사회에서 제작하는 경마 관련 정보지로, 홈페이지(<https://todayrace.kra.co.kr/main.do>)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따라서, 마주와 일반 경마 고객 간 경주마에 대한 정보 획득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기 운영중이라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미국·일본·영국·홍콩 등 한국 대비 경마 역사가 오래된 해외 주요 경마 시행국의 경우에도 마주의 일반적인 마권구매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한편, 미국·영국의 경우 마주의 일반적인 마권구매(승리에 배팅)는 허용되나, 경주에서 다른 경주마에게 질 것에 배팅하는 Lay 배팅은 금지되는데, 우리나라의 경마의 경우 상기 Lay 배팅방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주요 해외 경마 시행국 마권 구매 제한 현황 】

구분	구매 등 제한 대상	처벌수준
미국	☐ 근거 ○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단일 연방법 수준의 마권 구매 제한 규정 없음 ○ 주 단위의 경마위원회에서 정한 경마시행 관련 법 및 규정 존재 ○ 마주의 Lay 배팅 금지 * Lay Betting : 경주에서 말이 지거나 다른 말에게 질 것에 배팅하는 행위	☐ 근거 : 주별 경마시행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다름
일본	☐ 근거 : 일본 경마법 제29조 ○ 경마와 관련된 정부 직원 ○ 일본 중앙경마회의 임직원 ○ 지방 경마 관계자 ○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마주 배팅 허용) ○ 기타 경마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 근거 : 일본 경마법 제33조 ○ 2백만엔 이하 벌금 (한화 약 1,900만원)

홍콩	☐ 근거 : 홍콩 자키 클럽(HJK) 「Rules of racing and instructions」 ☐ 규칙 59 : 기수의 베팅 금지 (마주 및 조교사 등의 베팅 허용) ☐ 규칙 151-(14) : 기수에게 규정에 반하는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안 ☐ 규칙 151-(15) 경주에서 말이 지거나 다른 말에게 질 것에 베팅하는 행위	☐ 근거 : HJK 「Rules of racing and instructions」 규칙 23 ☐ 최대 600,000 HKD 벌금 (한화 약 1억 1,000만원)
영국	☐ 근거 : British Horseracing Authority(BHA) 「Rules of Racing」 INTEGRITY 섹션 ☐ 규칙 5: 기수와 보조원(Valet, 기수와 말의 경주를 보조하는 사람)의 베팅 금지 ☐ 규칙 6~11 : 조교사, 기수, 마주 등의 Lay 베팅* 금지 * Lay Betting : 경주에서 말이 지거나 다른 말에게 질 것에 베팅하는 행위	☐ 근거 : BHA 「Rules of Racing」, Table of penalties ☐ 자격 박탈 (최대 10년)

※ 자료: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 경영관리처 법무지원부 제출(2025. 3. 12.)

【 우리나라 경마 배팅 방법 】

구 분	적 중 방 법	적중확률 (10두기준)
단 승 식	○ 1착 1두를 적중	1/10
연 승 식	○ 1, 2, 3착 중 1두를 적중 * 출주마 7두 이하 시 2위 이내	3/10
복 승 식	○ 순서에 관계없이 1, 2착을 모두 적중	1/45
쌍 승 식	○ 1, 2착을 순서대로 적중	1/90
복연승식	○ 순서에 관계없이 3착 이내 2두를 적중	1/15
삼복승식	○ 순서에 관계없이 3착 이내 3두를 적중	1/120
삼쌍승식	○ 1, 2, 3착을 순서대로 적중	1/720

※ 자료: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 경영관리처 법무지원부 제출(2025. 3. 12.)

또한, 유사 입법례인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현행 「마사회법」과 유사하게 심판, 조교사, 싸움소 관리원 등은 우권 구매가 금지되나, ‘싸움소 주인’은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제23조(우권의 구매 제한 등) ① 경기 시행자는 미성년자에게 우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 아니 된다.

1. 경기 시행자의 임직원(경기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2. 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사람
3. 심판, 조교사
4. 조교사 등이 고용하여 싸움소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싸움소 관리원"이라 한다)
5. 수탁사업자
6. 그 밖에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414

「한국마사회법」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마사회의 임직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
7.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
8. 제3항제3호·제5호,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제7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마주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임원(임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한 경우
2.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4.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6.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④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이 변경되었을 때에 14일 이내에 마사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경주마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3. 조교사·기수 또는 말관리사에게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한 경우

4.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경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킨 경우
 6. 마주로서 직무상 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마주활동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 이상 그 명령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경마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

제9조(마주등록심의위원회) ① 마주 등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주등록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마주등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마주 등록취소 및 마주 활동정지에 관한 사항
2. 마주 승계등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주 등록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등록의 취소 및 활동정지)

- ②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주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주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 가. 제18조의 경주마 등록이 된 말
 - 나. 육성마(18개월령부터 경마계획표에서 정하는 경마장 입사제한 기준 연령 이하의 말에 한한다)로 마주등록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말
 3. 조교사·기수 또는 말관리사에게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한 경우
 4.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경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의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킨 경우
 6. 마주로서 직무상 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마주 활동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 이상 그 명령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경마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